

대구지방법원 2024. 11. 29 선고 2024가단12991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22.

판결 선고2024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9,538,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6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안민영

별지